

심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이하 '대한검도회'라 칭한다.)와 서울특별시검도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급(級), 단(段), 칭호(稱號), 심사위원자격, 심판자격 및 검도장 공인증, 대한검도회가 발행하는 자격증 등의 수여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8.>

제2조(적용) <신설 2023. 1. 18.>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적용한다.

- ① 대한검도회 정관 제5조 2에 의한 개인회원
- ② 대한검도회 및 서울특별시검도회의 공인을 받은 검도장, 스포츠센터, 검도동호인클럽, 생활체육검도 수련장 등

제2장 단 심사

제3조(단, 급의 구분) <개정 2023. 1. 18.>

- ① 대한검도회 및 본회 회원으로서 검도를 수련하는 자의 위계(位階)는 단(段), 급(級)으로 표시한다.
- ② 단(段)은 초단에서 9단까지로 하며, 급(級)은 9급에서 1급까지로 한다. 다만, 소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③ 단(段)은 대한검도회에서 수여하고 급(級)은 대한검도회의 위임에 의하여 본회 회장이 인정한다.
- ④ 급심사에 대한 규정은 대한검도회의 급심사 지침에 의거하여 본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단심사의 구분) 단 심사는 중앙심사와 지방심사로 구분한다.

제5조(중앙심사) 중앙심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정기심사(춘추 2회) : 5단 이상 심사
2. 순회 및 비정기심사 : 초단~7단 심사
3. 중앙심사는 대한검도회에서 실시하며 대한검도회 회장은 심사 실시 10일 전에 심사일시 및 심사장소를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3. 1. 18.>
4.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 수 및 합격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심사위원의 구성은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 18.>

심사단	심사위원	위원 수	합격조건
5 단	7단 이상	6 명	4명 이상 동의
6 단	8단 이상	6 명	4명 이상 동의
7 단	8단 이상	6 명	4명 이상 동의
8 단/1차	8단 이상	8 명	6명 이상 동의
8 단/2차	8단 이상	8 명	6명 이상 동의

제6조(지방심사) ① 지방심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심사 (춘추 2회) : 초 ~ 4단 심사

심사규정

2. 순회 및 특례심사 : 초 ~ 2단 심사

- ② 정기 및 순회심사는 본회에서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본회 회장의 지명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3. 1. 18.>
- ③ 특례심사는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지방심사위원들이 실시하되 심사위원명단, 심사일시, 심사장소를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본회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회 회장은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8.>
- ④ 지방심사의 결과는 본회에서 총괄하여 대한검도회에 상신한다. 다만, 지방심사의 상신은 시도별 연 6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 18.>
- ⑤ 지방심사위원은 제⑥항과 같이 구성하며 당해 시·도의 심사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대한검도회에 심사위원 파견을 의뢰하여 대한검도회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 18.>
- ⑥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 수 및 합격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단	심사위원	위원 수	합격 조건
초 단	5단 이상	5 명	3명 이상 동의
2 단	6단 이상	5 명	3명 이상 동의
3 단	6단 이상(7단 1명 이상 포함)	5 명	3명 이상 동의
4 단	6단 이상(7단 1명 이상 포함)	6 명	4명 이상 동의

- ⑦ 해외지부에 소속된 4단 검도인이 2년 중 1회 이상 대한검도회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 초단 심사에 한해 심사위원자격을 부여하기로 함. <개정 2023. 1. 18.>
- ⑧ 대한검도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도 수업학교 등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8.>

심사단	심사위원	위원 수	합격 조건
초단, 2단	6단 이상	3명	2명 이상 동의

제7조(학교 및 도장심사의 특례) ① 검도육성학교 및 도장의 심사는 제5조 제6항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 초 단 : 지도사범 6단 이상자의 심사추천
- 2 단 : 지도사범 8단 이상자의 심사추천 <개정 2023. 1. 18.>

- ② 도장 단심사의 경우 심사일 현재 당해 도장에서 6개월 이상 재적한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지도사범은 대한검도회로부터 심사위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소속단체를 운영하거나 재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별한 경우는 당해 본회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8.>

제8조(지방심사위원의 자격) ① 지방심사위원은 5단 이상자로서 대한검도회가 당해연도 지방심사위원 자격을 인정한 자 중에서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 18.>

- ② 사정에 따라 위촉되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 본회 회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촉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한검도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8.>

심사규정

제9조(중앙심사위원의 구성)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지명한다. 단, 8단 1차와 2차 심사위원은 중복하지 아니하며, 8단 2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심의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 18.>

제10조(시험심사) ① 심사는 시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심사는 초단에서 8단까지로 한다. 다만, 9단은 서류심사로 한다.

③ 시험심사 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8.>

1 급	실기, 본국검법, 검도의 본
초 단	실기, 본국검법, 검도의 본, 학과
2단~4단	실기, 검도의 본, 학과
5 단	실기, 검도의 본, 학과
6단, 7단	실기, 검도의 본, 학과
8 단 / 1차	실기
8 단 / 2차	실기, 검도의 본, 논문
9 단	소정의 심사회에 의한 서류심사

④ 검도의 본 심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급	대도 1본~3본
초 단	대도 1본~5본
2 단	대도 1본~7본
3단~8단	대도 7본 및 소도 3본

⑤ 학과시험 : 기술에 관한 문제, 한국 검도사 및 검도철학에 관한 문제 <개정 2023. 1. 18.>

⑥ 5단~7단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실기심사에 합격한 후 나머지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기 승단심사 1회에 한해 해당 과목만 재심사를 하도록 함.(8단, 칭호심사는 해당사항 없음)

⑦ <삭제 2023. 1. 18.>

제11조(심사의 채점) ① 심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② 심사의 채점은 “상·중·하”로 표기하되, 각 심사과목(실기, 본국검법, 검도의 본, 학과)에서 “하”가 있을 경우 과락으로 처리하여 합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제5조 4호과 제6조 6항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 18.>

제12조(심사자격의 제한 및 특전) ① 단의 취득일로 부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않으면 승단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승단 소정기간 및 제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심사규정

심사단	소정기간	제한연령
초단	1급에서 3개월	만13세 이상
2단	초단에서 1년 이상	
3단	2단에서 2년 이상	
4단	3단에서 3년 이상	
5단	4단에서 4년 이상	만16세 이상
6단	5단에서 5년 이상	
7단	6단에서 6년 이상	
8단	7단에서 10년 이상	
9단	8단에서 10년 이상	
		만48세 이상
		만65세 이상

② 국제대회에 입상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제1항의 소정기간을 1년 단축하여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연령별 최초급은 다음과 같다,

구분	최초급	비고
	9급	소정기간
중학생 이상	7급	4학년 미만 : 3개월
고등학생 이상	5급	4학년 이상 : 2개월

④ 본회가 실시하는 승단심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본회 관할하는 검도 시설(도장, 학교, 사회체육시설, 기타)에 6개월 이상 소속된 자에 한한다. <개정 2023. 1. 18.>

⑤ 비공인도장에 소속된 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없다.

⑥ 단별선수권대회 남자 초단부, 2단부 우승자에게 1개단 승단 특전을 부여한다.

⑦ 중앙심사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4년 동안에 대한검도회에서 정한 강습회의 참가횟수가 4회 미만일 경우, 심사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의 1(대학 검도전공학과 이수자에 대한 특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도 전공학과 재학생에 대해서 검도 3단, 4단 심사에 한해 심사 소정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8.>

1. 검도 관련 학점이 30학점 이상
2. 검도 전임 교수가 3명 이상 확보된 경우

제13조(심사신청 절차) ① 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첨부하여 별표 제2호의 단심사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8.>

② 중앙심사는 본회가 신청자를 취합하여 대한검도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대한검도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8.>

제14조(합격자 수속) ① 본회는 심사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한검도회에 단증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증발급신청서 1부 (별표 제1호 양식)

심사규정

2. 합격자 심사원서(사진부착) 각1부 (별표 제2호 양식)
3. 심사채점표 (별표 제4호 양식)
4. 소정의 단증 발급료

- ② 중앙심사 합격자는 대한검도회의 통보에 의하여 지정일까지 단증발급료를 대한검도회에 납부하여야한다.
- ③ 심사료 및 단증발급료 내역은 별표 제5호와 같다. <개정 2023. 1. 18.>

제15조(단증발급) ① 단증은 대한검도회장의 결재를 받아 발급한다. <개정 2023. 1. 18.>

- ② 대한검도회는 사·도지부의 단증발급신청에 대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단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 ③ 단증 발급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당월 15일 이전 신청자는 당월 1일자로, 16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 1일자로 한다.
- ④ 단은 발급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명예단 수여) ① 대한검도회 회장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단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5단 이상은 중앙심사 시 8단 2차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 18.>

- ② 제1항에 의한 입단 및 승단자는 시험심사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의한 입단 및 승단자는 재차 동 조항에 의한 승단이 불가하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단·급 심사 현황보고의무) ① 본회는 매년 결산보고와 함께 당해 연도 단·급 심사 현황을 대한검도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검도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제1항의 보고를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8.>

제3장 칭호 심사

제18조(칭호의 구분) ① 검도 고단자의 위계(位階)는 칭호로서 표시한다.

- ② 칭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사(鍊士) : 5단 이상으로 검도기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교사(敎士) : 연사(鍊士)로서의 수련을 쌓아 인격과 기능이 지도자의 위치에 이르고 검도의 보급 발전에 기여한 자
3. 범사(範士) : 교사(敎士)로서 인격이 고매하고 검의 리(理)와 기(技)에 정통하며 검도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모든 검도인의 모범이 되는 자

제19조(칭호의 심사) <개정 2023. 1. 18.>

- ① 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첨부하여 별표 제3호의 칭호심사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칭호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연사(鍊士), 교사(敎士) : 연2회(춘·추계 정기중앙심사), 비정기 심사 및 해외 순회심사
 2. 범사(範士) : 연1회(추계 정기중앙심사), 비정기 심사

심사규정

- ③ 칭호심사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연사(鍊士), 교사(敎士) : 검도 8단
 - 2. 범사(範士) : 심의위원
- ④ 칭호심사는 시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사(範士)칭호의 심사는 서류심사로 한다.
- ⑤ 칭호심사의 심사과목은 실기, 학과로 하고 채점, 신청 절차 등은 중앙심사에 준한다.

제20조(칭호의 수여) <개정 2023. 1. 18.>

- ① 칭호는 대한검도회장이 수여한다.
- ② 대한검도회장은 칭호심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합격자 수속) ① 칭호심사 합격자는 소정의 칭호증 발급료를 지정일까지 대한검도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8.>

- ② 칭호증 발급료 내역은 별표 제5호와 같다

제22조(심사 소정기간 및 연령) 칭호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소정기간 및 연령을 초과하여야 한다.

- 1. 연사(鍊士) : 5단 취득후 만3년 이상
- 2. 교사(敎士) : 5단 연사(鍊士)의 경우 연사(鍊士)칭호 수령후 만7년 이상
6단 연사(鍊士)의 경우 6단 취득후 만4년 이상
- 3. 범사(範士) : 교사(敎士) 칭호 수령후 만10년, 8단 취득후 만8년 이상, 연령 만60세 이상 <개정 2023. 1. 18.>

제23조(명예칭호 수여 및 추서) <개정 2023. 1. 18.>

- ① 대한검도회 회장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교사(敎士) 칭호 이상은 중앙심사 시 8단 2차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칭호 취득자는 칭호 시험심사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의한 칭호 취득자는 재차 동 조항에 의한 차기 칭호 취득이 불가하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7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본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칭호를 추서할 수 있다.
- ⑤ 해당자가 중병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본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한검도회장이 당해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⑥ 60세 이상의 고단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검도회장이 당해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자격시험 심사

제24조(자격시험심사의 구분 및 자격) ① 심사위원자격시험 : 5단 이상인 자

- ② 심판자격시험 : 심판자격시험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심사규정

1. 18.>

급	응시자격	비고
1급	국제대회 심판 참가자 또는 2급 심판자격증 취득 후 10년 경과된 자	
2급	검도 6단 이상 (3급 심판자격증을 취득)	
3급	검도 4단 이상	
4급	검도 3단 이상	

③ 사범자격시험심사 : 사범자격시험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검도 5단 이상인자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8.>

제25조(자격시험심사 시행) 자격시험심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23. 1. 18.>

구 분	시행	시기	비고
심사위원자격시험 심사	년 4회	정기(분기별)	
사범자격시험심사	년 4회	정기(분기별)	
심판자격시험 심사	년 4회	정기(분기별)	

제26조(자격시험심사공고) 자격시험심사는 대한검도회에서 실시하며 심사일시와 장소는 대한 검도회에서 공고한다. <개정 2023. 1. 18.>

제27조(자격시험심사의 합격조건)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수 및 합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8.>

구 분	심사위원	심사위원 수	합격조건	비고
심사위원자격시험 심사	8단이상	5명	3명이상 동의	
사범자격시험 심사	7단이상	5명	3명이상 동의	
심판자격시험 심사	7단이상	5명	3명이상 동의	

제28조(자격시험심사) ① 심사는 시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심사 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8.>

심사규정

구 분	과 목	비고
심사위원자격시험 심사	실기, 본국검법, 검도의 본, 학과	
사범자격시험 심사	실기, 검도의 본, 학과	
심판자격시험 심사	심판능력, 실기	

③ 학과시험 : 검도이론, 한국검도사, 심판 및 검도경기규칙관련 문제 등 <개정 2023. 1. 18.>

제29조(심사의 채점)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 18.>

제30조(자격시험심사 신청절차) 제13조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3. 1. 18.>

제31조(합격자 수속) ① 합격자는 대한검도회의 통보에 의하여 지정일까지 자격증 발급료를 대한검도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료 및 자격증 발급료 내역은 별표 제5호와 같다.

제32조(자격증 발급) ① 자격증은 대한검도회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 발급한다. <개정 2023. 1. 18.>

② 자격증은 발급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단, 4급 심판자격증은 시·도검도회에서 발급한다. <개정 2023. 1. 18.>

제5장 자격의 회수 등 처분

제33조(조사대상) <신설 2023. 1. 18.>

대한검도회는 제2조에서 정한 검도인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2. 체육관련 입학비리
3. 검도 수련과 관련된 폭력·성폭력
4. 심사 담합행위, 심사 질서 문란행위
5. 승부조작, 편파판정
6. 대회 부정참가, 대회진행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행위
7. 대한검도회의 정관과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8. 상대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제보와 소송을 일삼는 행위
9. 검도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한 행위
10. 유사단체 참여 등 대한검도회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11. 괴롭힘, 인권침해, 선거관련비위 행위
12. 기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신설)

심사규정

제34조(단 또는 칭호의 회수 등) 제2조 1호에서 정한 개인회원 중 단 또는 칭호를 취득한 자가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단 또는 칭호의 권위를 욕되게 하거나 대한검도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대한검도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단 또는 칭호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8.>

제35조(공인증 회수) 대한검도회는 제2조 2호에 의한 도장 및 단체가 검도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대한검도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인증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1. 18.>

제36조(단·급 심사권의 일시정지) <개정 2023. 1. 18.>

- ① 본회가 대한검도회로부터 위임받은 단·급 심사권을 남용하거나 비리, 기타 단·급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한검도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당해 본회의 단·급 심사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경우 정지 기간 중의 당해 본회의 단·급 심사권은 대한검도회가 행사한다.

제37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회수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 18.>

제38조(재조사 등) <신설 2023. 1. 18.>

- ① 처분을 받은 자가 대한검도회가 결정한 처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조사 신청의 취지 및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대한검도회에 신청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조사 신청은 1차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대한검도회는 제1항의 재조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조사 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 ④ 대한검도회는 “위원회”의 처분이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제39조(처분 정도의 결정과 사면) <신설 2023. 1. 18.>

- ① 위원회는 조사·처분 심사시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 ②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한 처분의 사면을 신청할 경우 대한검도회장은 그 정도 및 정상 등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을 승인할 수 있으며 사면신청은 별지 서식 제8호에 의한다.

제40조(처분 결과의 처리) <신설 2023. 1. 18.>

- ① “위원회”는 처분결과를 의결하면 그 결과를 별지 서식 제6호에 의한 처분결정서를 작성하여 대한검도회에 보고한다.
- ② 처분결정서에는 처분의 종류, 처분사유, 처분근거 및 재조사 신청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규정

- ③ 대한검도회는 “위원회”가 보고한 혐의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확정하여 혐의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대한검도회의 처분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다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8조에 의한 재 조사를 신청한 경우 처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제41조(다른 규정의 준용) <신설 2023. 1. 18.>

혐의자의 조사·처분에 있어 심사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내용의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한검도회의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24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2. 3. 23.)

※ 단·칭호 심사 통합

제26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3. 11. 1.)

제27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4. 10. 1.)

제28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5. 5. 1.)

제29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 1. 24.)

제30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 1. 16.)

제3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 12. 21.)

제32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 1. 19.)

제33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 8. 14.)

부 칙[2009. 12. 3.]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6.]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1조 제6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 개정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 응시연한 단축의 적용을 받아 중앙심사에 응시하였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부 칙[2017. 4. 22.]

심사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18]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2조(심사 소정 기간 및 연령) 제3항, 제24조(자격시험심사의 구분 및 자격) 제3항, 제28조(자격시험심사) 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